

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 공개모집 공고

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1년 12월 1일

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

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 공개모집

1. 채용구분 : 기간제 근로자 1명

2. 계약기간 : 약 6개월 (2022. 1. 3 ~ 2022. 6. 30)

※ 업무량에 따라 1년까지 연장가능

3. 업무분야

- 신용보증, 채권관리, 경영지원, 소상공인 교육·컨설팅 등 업무보조

4. 근무지

- 재단 본·지점 및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(울산광역시 내)

5. 자격요건

가. 학력·전공·연령·성별 제한 없음

나. 지역인재 채용 관련 거주지 제한 미 결격자

다. 재단 「인사규정」 제14조(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)

※ 결격 사유 상세내용은 [별지 1호] 참조

6. 우대사항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

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

제31조 제1항과 제2항의 취업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점 적용 불가

7. 근로조건

가. (급여)

- 월급여 : 1,915,000원
- 상여금 : 효도휴가비(설, 추석 각 연 50%)
- 기 타 : 중식대 월 150,000원, 출퇴근보조비 월 150,000원, 시간외 근무 시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

나. (근무시간) 주 5일 근무, 평일 8시간 (9시~18시)

다. (복지후생) 4대 보험 가입, 단체보험 가입, 복지포인트 지급

8. 채용절차 및 심사방법

전형 단계	실시일자	평가기준	배점	선발배수	합격자 발표일자	
서류 전형	'21.12.08(수)~12.15(수) (낮12시까지)	결격여부만 판단	-	-	'21.12.15(수) 14시 이후	
면접 전형	'21.12.21(화)	아래의 항목을 면접위원이 평가 후 산술평균한 점수 (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) 산정	100점	1명 *3배수의 예비합격자 선정	-	
		구 분				배 점
		기본자질 및 핵심가치				20점
		전문분야지식				30점
		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				20점
창의력·기타발전가능성	30점					
신원조회 이상여부 및 최종합격자 발표			-		'21.12.27(월)	

9. 채용일정

- 가. 공고기간 : 2021. 12. 01(수) ~ 2021. 12. 15(수)
- 나. 서류접수기간 : 2021. 12. 08(수) ~ 2021. 12. 15(수) 낮 12시까지
- 다. 면접일자 : 2021. 12. 21(화)
- 라. 신원조회 이상여부 확인 : 2021. 12. 22(수) ~ 2021. 12. 24(금)
- 마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1. 12. 27(월)
- 바. 근무일자 : 2022. 01. 03(월)

10. 제출방법

- 재단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(www.ulsanshinbo.co.kr)

11. 제출서류

제출 서류 목록	비고
1. 입사지원서	공통
2. 자기소개서	
3. 경력증명서(경력사항 확인용)	
4. 보유자격증 사본	
5.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)	
6. 교육사항 증명서(졸업증명서)	면접심사 시 제출
7. 주민등록등본 및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주민등록초본(지역인재 확인용)	
8. 신분증	최종합격자 제출
9. 건강검진 결과서	

※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
※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린 후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 할 것

12. 문의처

-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 김다정 대리 (☎ 052-283-8363)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, 3층 울산신용보증재단

13.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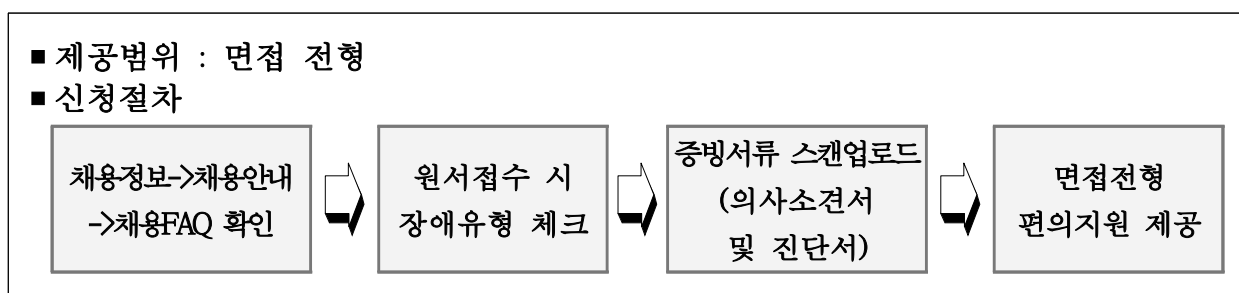
- 가.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,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비합격자 제도 시행
- 나.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3명을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면 차순위자 순으로 입사기회 부여

14. 주의사항

- 가. 지역인재 채용 관련 지원자격 요건 미충족시 ‘탈락’ 처리
- 나.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 ‘탈락’ 처리
- 다.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력사항 등 최종 합격 시 증빙
- 라. 허위사실 기재 및 채용비리 사실 확인 즉시 ‘탈락’ 처리 후 민·형사상 조치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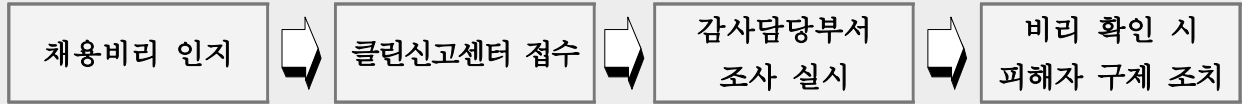
15. 지원자 권리 보호제도 안내

- 가.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



나. 이의 제기 절차

- 근거 :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」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
- 청구방법 : 재단 홈페이지 ‘클린신고센터’ 로그인 후 작성 후 제출
- 처리절차



- 피해자 구제방법

피해자 특정 가능	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단계로 채용시 기회 부여
피해자 특정 불가	피해자 그룹 대상으로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절차 실시

16. 기타사항

- 가. 응시자의 부적합 사유 또는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나. 제출서류 중 서류 발급기준일(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) 미준수자는 보완요청 없이 탈락될 수 있음
- 다. 제출서류가 허위내용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추후 입사 불가
- 라.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,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17.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

- 가. 당 재단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함.
- 나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 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
- 다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

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당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.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재단이 부담
라. 당 재단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간 채용서류 보관하며,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

18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관련 안내사항

- 가. 면접시험 당일 기준 코로나19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는 응시 불가
나. 면접시험 지원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당일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를 실시하며, 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」 의심 증상 있으면 응시 제한
* 37.5℃ 이상의 발열 및 기침·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
다. 면접시험 전 과정은 면접관·응시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며, 재단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통해 손소독 후 시험장소 입실

울 산 신 용 보 증 재 단

결격사유

구분	세부내용
<p>지역인재 채용관련요건 (세부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※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.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,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3. 울산소재의 학교(초·중·고 또는 대학) 졸업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
<p>「재단 인사규정」 제1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 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6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. 병역을 기피한 자 8.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 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의 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